

# 일본 탐정업의 현황과 시사점

김일곤\*

## 요 약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 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 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 Implications of Japanese Private Detective Service

Kim Il Gon\*

### ABSTRACT

Japan came to result in enacting and enforcing the law on rationalization of service pertinent to the Private Detective Service Law in order to rationalize the illegal service realities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dealers and detective agencies, which were flooded in 2006.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problems are still taking place in relation to Japanese private detective service as of 2012. However, Japan's regulatory agencies can be known to revise the corresponding statute and to make effort to improve consciousness of agencie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Accordingly, it can be considered to be great in implication as for our country's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the future. Arranging these contents, the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rovement in problems related to other statutes according to performance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Second, it is reinforcement in management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violators. Third, it is propulsion of rationalization in cost according to a contract of private detective service. Accordingly, it can be considered to be necessary for being newly legislated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from the perspective dubbed development and social right function in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by further supplementing Japan's these problems and arranging improvement plans so that the corresponding service called private detective service can do more public function in society.

**Key words : Private Detective Business, Japan Private Detective Law, Private Investigation, Life Securities,**

---

접수일(2012년 10월 8일), 수정일(1차: 2012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2012년 10월 23일)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 1. 서 론

최근 개인의 안전욕구 증가로 인한 재산 및 권익보호 또는 다양한 정보 입수 등과 같이 시큐리티 영역 전반에 걸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개인 또는 단체의 수탁에 따른 민간업자의 전문적인 조사 및 정보획득 활동은 수탁자가 범죄자 및 신용불량자로부터 각종 범죄피해를 받지 않도록 범죄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범죄문제와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민간이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인 탐정(민간조사)제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업이라는 용어만 활용되고 있지 않을 뿐 각종 민원서류 대행이나 택배서비스 등의 단순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이른바 ‘심부름센터’ 등이 근래 보안 컨설팅 등의 간판을 내걸고 음성적으로 영업활동을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2].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탐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분별한 탐정업관련업자의 난립은 자칫 개인정보 누출, 불법도청, 공갈협박 등과 같은 의뢰자에 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음성적으로 개인의 의뢰를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탐정업자와 흥신업자의 난립과 각종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2007년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關する法律(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일본 탐정업법’이라 함)”을 시행하여 탐정업 업무와 관련된 피해사례 및 사회문제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탐정업자가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의 상충으로 인한 부득이한 법률위반, 업자의 부적절한 행위(업자의 갑작스런 방문, 과대광고, 고액계약 요구, 해약요구 불응)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3].

따라서 민간조사업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민간조사업제도 또는 민간조사업관련 법령의 도입에 관한 연구[4][5][6][7], 교육 훈련에 관한 연구[8], 민간조사업제도 규제에 관한 연구[9] 등으로 연구되었으며,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일본의 탐정업 사례에 대하여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 탐정업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관리 감독기관이 관심을 가져야할 현안에 대하여 고찰된 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7년도에 시행된 ‘일본 탐정업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조사업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관한 시사점과 대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일본 탐정업의 변천과 현황

### 2.1 일본 탐정업의 역사적 개요

탐정업무란 정보라는 무형의 상품을 취급하는 조사적 직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양한 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도의 윤리관’과 직업상의 ‘비밀을 준수’ 해야 하는 의무가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탐정은 조사업자의 일종으로서 타인의 비밀을 비밀리에 조사하거나, 범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 또는 그 행위를 지칭하며, 탐정사무소나 흥신소 등에 속하는 조사원들을 주로 말하며, 일본 관서지방의 경찰들은 자체적인 용어로 형사를 탐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2.1.1 명치유신(明治維新) 이전

‘조사’가 일로서 확립되기 전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우나 조사라는 행위는 인류 사회성립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적(外敵) 또는 식량이 어디에 있는가? 등과 같은 정보 조사를 시작하며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국시대(戰國時代)부터 에도시대(江戸時代)에 걸쳐서는 적의 무리에 잠입하여 정보를 캐내는 시노비노모노(忍びの者)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근대산업으로써의 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산업으로서 조사가 성립된 것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산업이 발전되면서 대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명치시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10].

#### 2.1.2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명치유신에 의해 조사와 관련하여 제도가 제정되었으나, 당초는 치안이 불안정하였으며, 각 지역에서 테

러나 폭등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수집과 문제해결을 위해 밀정(密偵, 비밀정찰)을 배치하면서부터 ‘탐정’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탐정’과는 조금 달랐다. 그후 사회가 안정되고 산업이 발달되어 주식회사나 증권거래소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신용’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되면서, 1890년대부터 이른바 ‘홍신소’가 설립되게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 최초로 ‘탐정회사’가 설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즉 조사업은 경제의 발전과 함께 성립되면서 발전해온 것이다[11].

### 2.1.3 제2차 세계대전 전 · 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의 유동화와 경제 부흥 및 성장에 의해 홍신소·탐정회사 역시도 급성장하였다. 또한 이시기에 상업홍신소와 동경홍신소가 합병하여 동아홍신소로 사명을 개명하였다. 더불어 ‘사대홍신소(테이단, 쇼코, 테이코, 진코)’라고 불리는 업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인권존중과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들 사대홍신소 중에는 인사조사업무를 폐지한 곳도 나오게 되었다. 이시기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윤리와 사회적 사명에 대한 의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표 1> 일본 조사업의 연혁 연표

| 년도    | 내용   |
|-------|--|
| 1892년 | 일본에서 일본은행과 오사카지역의 은행 등에서 출자를 위해 外山修三씨가 상업홍신소를 설립. 白鳥敬之助씨에 의해 상공사(현재의 동경상사 리서치)가 설립되었음. |
| 1895년 | 일본의 사립탐정계의 개척자 岩井三郎 사무소가 설립됨.  |
| 1896년 | 제일은행장 澁澤榮一씨에 의해 동경홍신소가 설립됨.  |
| 1897년 | 後藤武夫씨에 의해 제국홍신소(현재의 제국 데이터뱅크)가 설립됨.  |
| 1898년 | 인사홍신소(東京商業興信所) 설립됨.  |
| 1909년 | 藤山雷太씨에 의해 동경상업홍신소(東京商業興信所) 설립됨.  |
| 1916년 | 제국비밀탐정사(帝國秘密探偵社, 현재의 테이탄)이 설립됨   |

자료 : 大德 直美·原 正紀(2010)[12].

\* 1916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격화로 일본의 홍신소

모두는 업무를 중지하게 됨.

### 2.1.4 근 · 현대

종전이후 산업발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한 일본은 눈분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이와 더불어 조사업이 또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전국에 약 수 천개의 회사가 영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조사업자들은 ‘사단법인 일본조사업협회’, ‘내각부 허가법인 전국조사업동조회’, ‘전국조사업협회 연합회’, ‘동경종합조사업협회’ 등과 같은 단체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조사업에 관한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연구,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10].

## 2.2 일본 탐정업법의 주요내용

### 2.2.1 탐정업과 탐정업무의 실시원칙

일본의 탐정업은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한 법적 규제가 없어 조사 대상자의 비밀을 이용한 협박사건, 위법한 수단에 의한 조사, 비용시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탐정업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보디나온 개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탐정업법을 제정하였다[13].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의 실시원칙 및 규칙 준수, 비밀준수, 중요사항 설명 등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탐정업법 제6조에 따르면 탐정업자 및 탐정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탐정업무를 수행할 시 업무의 실시원칙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 권한부여나 탐정업무를 이유로 정당한 업무행위라 하여도 위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6조 제1항은 형법상의 범죄행위인 조사대상자 감시, 개인사유지 무단침입, 전화 감청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주민기본대장 관람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제한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둘째, 일본 탐정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타인의

안녕을 해하는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시 등의 처분 대상에 처하게 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란 형사상의 위법적인 행위 이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일본 탐정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탐정업자는 업무 조사 결과가 위법한 범죄행위에 활용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경우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경우, 의심하지 않고 용인한 경우 이를 위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소개 파악 업무 의뢰를 받았을 경우 탐정업자는 해당 의뢰자가 배우자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위배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탐정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넷째, 일본 탐정업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탐정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탐정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탁할 경우의 규제이다. 정보를 청취할 경우 또는 조사과정중 취득한 사진 등을 제 3자에게 현상을 맡기는 등의 행위는 위법행위가 아니지만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업무 위탁의 경우,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무허가 업자에게 탐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법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 탐정업법 제8조는 중요사항의 설명 등의 관계로써 탐정업무 수행에 있어 업자가 의뢰자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을 경우 업자가 업무의뢰자에게 반드시 업무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교부해야 한다.

여섯째, 일본 탐정업법 제10조 제1항은 비밀 유지 등의 관계에 대한 규제이다. 탐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탐정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임원, 사무, 경리, 파견 근무자 등 다양한 대상을 업무 종사자로 규정하여 이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업자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을 경우 이용목적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유의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부정 또는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탐정업법 제10조 제2항과 같이 필요한 규정 정비 및 물적 조치(열쇠 보관소, 시큐리티 장치를 한 컴퓨터 등)가 이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 2.2.2 신고 및 결격사유

일본 탐정업법 제4조 신고는 탐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자가 해당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할 서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은 해당 관할경찰서장에게 해당업자의 본점, 지점, 지사, 사업소 등 모든 영업소, 상호, 주소, 주요 영업소, 해당 영업소의 홍보에 사용될 명칭, 업무개시 등에 관한 신고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해당업자가 업무폐지, 영업소 소재지 변경, 법인 임원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명시한 규정과 신고기한이 각각의 변경일로부터 익일을 기준 1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탐정업법 제3조 결격사유는 탐정업자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업자 또는 임원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할 준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결격사유는 ① 성년피후견인(금치산자), 피보좌인(한정치산자), 파산에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형 집행을 선고 받았거나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최근 5년간 처분(영업정지 6개월 이내)을 위반한 자, ④ 폭력단체의 단원의 구성원 탈퇴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영업에 관하여 성년과 같은 능력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 ⑥ 법인과 관련하여 임원의 업무 집행, 감독 등의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일본 탐정업법 제3조 제1호에서 제5호의 규정에 속한 경우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누구든지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 신고한 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2.3 교육

일본 탐정업법 제11조는 탐정업자가 고용한 고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자가 실시해야하는 필요 교육 내용으로는 해당 탐정업 법령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시작으로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적정 탐정업무 실시방법,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올바른 취급방법 등이 있다. 탐정업자가 종사자에게 부적절한 업무를 종사도록 할 경우에는 지시 등의 처분의 대상이 되며, 더불어 교육 수행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계획서 및 교육실시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2.2.4 지시 및 행정처분

다음의 경우에는 지시의 대상이 되는데, 일본 탐정업법 제5조, 타인에 대한 탐정업자의 명의 대여 금지(무허가자 및 허가취득자), 제12조, 탐정업자의 명부 비치와 관련하여 명의대여 금지의 내용을 준수함과 동시에 종사자에 대한 탐정업무 내용 기재 및 장부 비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13조 1항은 업무 실시 통보 및 업무 현황조사에 있어 법과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한 공안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소재지의 관할 공안위원회에 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관할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에서도 탐정업무 수행토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관할 공안위원회가 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도·감독(타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관할 공안위원회가 통지함)할 수 있으며, 또 해당 규정을 위반한 업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탐정업법 제15조는 행정처분은 탐정업자 등이 법령위반 행위를 한 경우 관할 공안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과 청문 기회부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탐정업자의 결격사유 해당으로 인한 관할 공안위원회로부터의 영업폐지 명령과 청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 2.3 일본 탐정업의 현황

### 2.3.1 탐정업 신고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탐정업 누적 총 신고건수는 5,350건으로 매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78건이 증가하였다. <표 2> 는 탐정업 신고 현황 추이를 2008년도부터 2011년도 말까지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일본 탐정업의 신고현황 추이 (단위: 건)

| 년도<br>내용      | 2008  | 2009  | 2010  | 2011  | 전년 대비 |
|---------------|-------|-------|-------|-------|-------|
| 신규 신고수        | 1,038 | 1,074 | 933   | 803   | 130   |
| 개인            | 811   | 784   | 734   | 627   | 107   |
| 법인            | 227   | 290   | 199   | 176   | 32    |
| 폐지 신고수        | 475   | 554   | 693   | 619   | 74    |
| 사망에 의한 증명서 반납 | 11    | 6     | 6     | 8     | 2     |
| 연말 현재 신고 수    | 4,439 | 4,953 | 5,172 | 5,350 | ▲178  |
| 개인            | 3,129 | 3,491 | 3,760 | 3,914 | ▲154  |
| 법인            | 1,310 | 1,462 | 1,412 | 1,463 | ▲51   |

| 년도<br>내용     | 07 | 08 | 09 | 10 | 11 |
|--------------|----|----|----|----|----|
| 무허가 영업       | 3  | 0  | 1  | 3  | 0  |
| 명의대여         | 1  | 0  | 0  | 0  | 0  |
| 신고서 허위 기재    | 1  | 0  | 0  | 0  | 0  |
| 주요사항 설명서 미교부 | 1  | 0  | 1  | 0  | 0  |
| 중요설명서 허위 기재  | 0  | 0  | 0  | 1  | 0  |
| 지시처분 위반      | 0  | 0  | 0  | 0  | 1  |
| 총수           | 6  | 0  | 2  | 4  | 1  |

자료: 日本警察廳(2012)[14]을 재구성

### 2.3.2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검거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의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된 현황으로써 다음의 <표 3>, <표 4>, 와 같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탐정업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7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법률위반 형태를 살펴보면 2007년에는 주로 무허가 또는 허위신고 및 각종 제출 서류미제출 등과 같은 법률위반 유형이 대부분이었으나, 2011년 현재는 지시사항 등의 탐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위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현황 추이(2007-2011)

(단위: 건)

| 년도<br>내용     | 07 | 08 | 09 | 10 | 11 |
|--------------|----|----|----|----|----|
| 무허가 영업       | 3  | 0  | 1  | 3  | 0  |
| 명의대여         | 1  | 0  | 0  | 0  | 0  |
| 신고서 허위 기재    | 1  | 0  | 0  | 0  | 0  |
| 주요사항 설명서 미교부 | 1  | 0  | 1  | 0  | 0  |
| 중요설명서 허위 기재  | 0  | 0  | 0  | 1  | 0  |
| 지시처분 위반      | 0  | 0  | 0  | 0  | 1  |
| 총수           | 6  | 0  | 2  | 4  | 1  |

자료: 日本警察廳(2012)[14]을 재구성

<표 4>는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으로써 영업폐지 명령으로 인한 폐지 건수는 2011년 6건으로 2007년도 탐정업법을 시행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주요 폐지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법 제3조인 결격 사유와 관련된 행정처분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행정처분 유형은 제2호 형의 집행 관련 사항과 제4호 폭력 단원 관련 사항, 제6호 범인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법 제3조의 1호에서 5호와의 관련 유무 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도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폐지가 6건, 영업정지명령이 5건, 지시가 52건으로 나타났다.

<표 4> 탐정업자의 행정처분(폐지명령) 현황

(단위: 건)

| 내용         | 년도        |    |    |    |    | 증감 |    |
|------------|-----------|----|----|----|----|----|----|
|            | 07        | 08 | 09 | 10 | 11 |    |    |
| 영업폐지명령 건 수 | 0         | 1  | 3  | 1  | 6  | ▲5 |    |
| 결격사유       | 제3조 1호 관련 | 0  | 0  | 0  | 0  | 0  |    |
|            | 제3조 2호 관련 | 0  | 1  | 3  | 0  | 5  | ▲5 |
|            | 제3조 3호 관련 | 0  | 0  | 0  | 0  | 0  | 0  |
|            | 제3조 4호 관련 | 0  | 0  | 0  | 1  | 1  | 0  |
|            | 제3조 5호 관련 | 0  | 0  | 0  | 0  | 0  | 0  |
|            | 제3조 6호 관련 | 0  | 0  | 1  | 0  | 1  | ▲1 |
| 결격사유 합계 수  | 0         | 1  | 4  | 2  | 7  | ▲6 |    |

자료: 日本警察廳(2012)[14]을 재구성

아울러 탐정업자의 행정처분 중 지시·정지명령 처분 현황이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시·정지명령 처분도 마찬가지로 탐정업법의 제3조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며, 주요 위반 지시·정지명령 사항으로는 변경 신청 허위, 서류교부 위반, 명부 비치 위반, 탐정업과 관련하여 타법령 위반 등이 있으며, 2011년 현황을 살펴보면 변경 신청 허위에 의한 지시가 12건, 서류교부 위반에 의한 정지 1건과 지시 8건, 명부 비치 위반에 의한 지시가 16건, 업무와 관련하여 타 법령위반에 의한 정지가 2건과 지시가 2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탐정업법 위반 사항들은 주로 지시명령이 대부분이며, 정지 명령은 일부 위반사항에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2.3.3 탐정업 관련된 타법령위반 검거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탐정업법에 관한 타 법령위반의 검거건수는 <표 5>와 같다. 탐정업법 시행 초기에

는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주거침입관 관련된 타법령 위반 유형이 주로 나타났으나, 2009년도 이후부터는 협박, 위조 등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 5> 탐정업무 관련 타 법령의 위반 검거현황

(단위: 건)

| 내용         | 년도 |    |    |    |    |
|------------|----|----|----|----|----|
|            | 07 | 08 | 09 | 10 | 11 |
| 주거침입       | 1  | 1  | 4  | 0  | 0  |
| 명예훼손       | 0  | 0  | 1  | 0  | 0  |
| 기타(협박, 위조) | 3  | 0  | 2  | 5  | 4  |
| 총수         | 4  | 1  | 7  | 5  | 4  |

자료: 日本警察廳(2012)[14]을 재구성

### 2.3.4 탐정업 업무 의뢰 내용과 비용

탐정에 대한 업무 의뢰 내용으로는 업자의 특화된 서비스에 따라 자세한 업무 내용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불륜조사, 각종 비리조사, 신종자 및 소재지조사, 개인 신용조사, 기업 신용조사, 기타 조사로 사생활 보호, 재판자료 수집 등, 교제 상대 및 적성조사, 각종 감정조사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조사항목과 비용 내역은 <표 6>과 같다.

<표 6>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 조사항목       | 비용     | 조사내용                 |
|------------|--------|----------------------|
| 잠복조사       | 3만엔부터  | 조사대상자 조사(주간 1H, 2만엔) |
| 비리·신원·시장조사 | 10만엔부터 | 불륜, 비리, 기업정보 누출 등 조사 |
| 결혼·미행조사    | 15만엔부터 | 교제상대 상황, 미행(1일, 8H)  |
| 가출·범죄조사    | 20만엔부터 | 생존·소재지, 절도·횡령 사실조사   |

자료: 社)日本調査業協會[15], 검색일: 2012. 6. 30.

항목별 적용 최소비용은 약 3만엔(한화 약 42만원) 서부터 약 20만엔(한화 약280만원)으로 나타나고 이으며, 업무의 난이도 및 조사 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계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3. 일본 탐정업의 문제점과 시사점

#### 3.1 일본 탐정업 운영의 문제점

##### 3.1.1 타법령 위반의 문제점

2006년 탐정업법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작용으로 탐정업무와 관련하여 타 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大徳 直美·原 正紀(2010)[12]는 2007년도 이후 탐정업무가 합법적으로 활성화 되면서 발생한 타법령과의 문제점 일곱 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배우자폭력 방지법과의 문제점으로써, 배우자 폭력 방지법은 일본 국내에서 DV방지법(Domestic Violence, 가정내 폭력)이라고 부리고 있다. 수탁자가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인지를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의뢰와 동시에 관련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에 대한 확인절차의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스토키 규제법과의 문제점으로써, 스토키 규제법은 스토키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스토키 피해 방지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규제법이다. 그러나 탐정업자가 업무의뢰자가 스토키 규제법에 의거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무상의 조회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문제점으로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직접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종종 개인정보 누출 피해자 또는 개인정보 조사 대상자로부터의 소송에 의한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여, 업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법률과의 문제점으로써, 탐정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경찰관이 활용하는 탐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업무 내용 역시 대부분 경

찰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폭력사건, 불륜, 사기사건 등과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탐정업자에게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어떠한 조사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조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문 데이터베이스 정보 공개와 취급에 관한 법규와의 문제점으로써, 위조문서, 범죄 증거 수집 등을 위해 탐정업 업무의 일부분인 지문감정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지문을 활용한 조사는 보다 사건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국가가 거액의 비용을 들여 구축한 지문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폭력단체로부터의 업무 의뢰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즉 반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부정한 업무의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탐정업자들이 응해서는 안 될 사항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로부터의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상호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실종자 탐문 조사 및 신원조사의 일환인 주민표 열람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탐정업자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3자의 주민표 취득 및 열람하여 해당 정보를 의뢰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법률상 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해당 관할 기관이 부정한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을 이유로 일본 개인정보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열람 및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관,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또는 열람 가능 대상자들의 요청에 의한 탐정업자에 한해서만 주민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16].

##### 3.1.2 탐정업법 위반업자의 증가

2006년 법률 제60호로 제정된 탐정업법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실시한 이후, 신규업자의 수가 2007년 약 3,900여개에서 2011년 현재 5,300여개로 많은 수의 개인 및 법인 탐정업자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탐정업자들의 양적 증가는 해당 업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상호 경쟁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해

당 업자들의 과도한 경쟁과 범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 업무 조사 등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탐정업 관련 법규 위반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9년도와 2011년도에 조사된 일본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기획과의 발표에 의하면, 2007년도에 업무 폐지 및 지시·행정처분을 받은 업자 수는 총12건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도에 업무 폐지 및 지시·행정처분을 받은 업자 수는 총84건으로 7배가 증가하였다[14].

그리고 관할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 정식신청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무허가 업자의 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무허가 업자의 위법적 조사행위로 많은 피해자가 초래되고 있어 사회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탐정업의 발전에 저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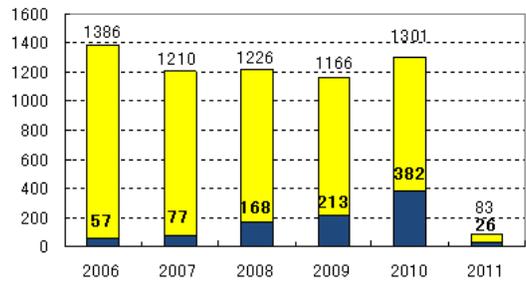
### 3.1.3 탐정업 관련 협회의 난립과 비용시비

일본의 탐정업무와 관련된 협회는 사단법인 탐정협회, 일본조사업협회, WAD 세계탐정협회,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홍신탐정업협회, 기타 홍신포 관련 협회가 다수 난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각 단체마다 탐정업무와 관련하여 관록과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각 지방마다 지회를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협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가맹회원사에 대한 탐정업무 알선과 고객 유치상담이 대부분이다. 또한 협회는 수익 사업으로 협회의 가맹회원으로부터 가맹비를 받는 조건으로 회원사에게 업무의뢰를 요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회원사에게 업무알선 연결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객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5,000엔을 청구하여 협회 재정수입에 보태고 있다[16].

그러나 협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실시한 이러한 수익사업이 최근 무분별한 알선 수익사업으로 전락하여 신뢰성 높은 탐정업자를 가맹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이고 신뢰성이 결여된 탐정업자들을 규제조건 없이 무작위로 가맹시키고 있어 고객과의 다양한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탐정업무 수행에 있어 업자와 소비자 간에 발

생하는 주요 분쟁 사항으로는 미확인 업자의 갑작스런 방문, 과대광고, 고액계약 요구, 해약요구 불응 등이 있으며, 특히 비용과 관련하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에서 발표한 탐정업무 상담관련 중 비용시비 상담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탐정업법 시행 이후 탐정업무 관련 상담 내역 중 비용시비 관련 상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탐정업무 비용시비 상담건수 추이

자료: 特立行政法人國民生活センター[17]

\*상단의 숫자는 전체 탐정업무 관련 상담내역 건수

\*\*하단의 숫자는 비용시비 관련 상담내역 건수

## 3.2 일본 탐정업 사례에 따른 시사점

### 3.2.1 적극적인 법령 개정추진

탐정업무는 일정한 범위가 규정되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법령과 상충되어 법령 위반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배우자폭력 방지법, 스톡커 규제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지문 데이터베이스 정보 공개 및 취급, 폭력단체로부터의 의뢰, 실종자 탐문과 신원조치와 관련된 법령과의 법령위반 상황은 일본의 탐정업계 있어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민간조사업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과의 상충에 따른 탐정업 활성화의 저해를 대비하여 해당 법령의 철저한 분석과 다양한 개선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도 9월 30일에 전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자가 의뢰자

또는 조사자의 개인정보 취득 또는 조사에 있어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되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공익적 목적과 업무의뢰자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해당 관할 관공서로부터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3.2.2 부정 또는 부실 업자의 철저한 관리

다수의 탐정업 관련 협회가 설립되면서 일부 협회들은 자체적인 재정보호 및 규모 확장을 위하여 가맹 회원 모집 시 부실 탐정업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무작위로 부실 탐정업자를 가맹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무분별한 협회의 부실 탐정업자 가맹회원 모집은 재정보호 및 규모 확산이라는 의미에서 유의미한 협회 정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자칫 부실 탐정업자들을 알선해주는 부실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

2007년 일본 탐정업법이 시행된 이후 시행년도에는 법령을 위반한 탐정업자들이 적었으나, 2011년도에 들어서서는 개인 및 기업 탐정업자 수의 양적 증가와 함께 법률을 위반한 탐정업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탐정업자의 부정위반 행위의 유형은 크게 주거침입, 성추행, 공갈협박, 비밀촬영에 따른 업자의 배상처분, 사기, 살인 등으로 나타났다. 村上 麻利(2007)[18]에 의하면 탐정업자 증가에 따른 업무 도급의 지나친 경쟁과 기준을 미달하는 저가 입찰 등으로 인한 부실 업자의 양산과 그에 따른 부실업무 수행이 부정하게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탐정업자들과 해당 법령 위반 업자들이 늘어날수록 민간에 의한 탐정업무는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3.2.3 업무 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탐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의뢰자와 사전에 합의 되어야할 부분이 업무 수행에 따른 적정비용의

지불이다. 탐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본탐정협회는 적정 조사 요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탐정협회가 마련한 최저기준 요금은 강제 규제사항이 아닌 권유사항이므로 탐정업자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 상이하게 계상될 수 있으므로 그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의 보고 내용과 같이 2006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탐정업무 관련 상담이 실시되었으며, 2011년 상반기까지 비용시비 관련 상담 누적 건수가 900여건을 초과하는 등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매년 증가되고 있다. 비용시비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과 다른 필요 이상의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조사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한 계약 없이 업무 수행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의 경우, 계약해지 및 조사중지 요청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 시비의 경우 등 탐정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비용시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비용관련 문제 발생 사례를 참고로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체도 도입에 앞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시비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더불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4. 결 론

일본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해왔던 탐정업관련 행위에 대하여 2007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난립한 탐정업자 및 홍신소의 불법적인 업무 작태를 적정화시키기 위하여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업자 또는 행위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문제를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체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본 연구의 결과이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령위반 문제점 개선이다. 2007년도 이후 탐정업자가 합법적으로 활성화 되면서 일본 내에서 탐정

업 수행과정에 있어 타법령과의 관련 문제점으로 배우자폭력 방지법, 스톡유 규제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지문 데이터베이스 정보 공개 및 취급, 폭력단체로부터의 의뢰, 실종자 탐문과 신원조회가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의 관련 법령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지문 데이터베이스 정보 공개 및 취급, 폭력단체로부터의 의뢰 거부, 실종자 탐문 및 신원조회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치와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정 또는 부실 탐정업 업자의 철저한 관리 강화이다. 2007년 일본 탐정업법을 실시한 이후, 신규 업자의 수가 2007년 약 3,900여개에서 2011년 5,300여개로 양적인 면에서 증가하였으나, 해당 업자들의 과도한 경쟁과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 업무 조사 등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해당 관할 기관은 민간조사업의 기반이 일정수준 향상되고 유지될 때까지 민간조사업자의 숫자를 한정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업자만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탐정 업무 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일본의 “독립법인 생활안전센터”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업자와 소비자간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항이 비용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탐정협회는 탐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정 조사 요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회의 최저기준 요금은 강제 규제사항이 아닌 권유사항이었기에 탐정업자는 준수의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 수탁에 있어 비용결정은 업자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이하게 계상되고, 결국 탐정업무의 적정화와 관련하여 충분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민간조사업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이러한 업무 수탁과 관련된 비용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규제와 감사가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업제도 도입을 위해 제16대 국회 하봉순 의원(1999년)과 17대 국회 이상배의원(2005) 등과 제18대 국회의원 이인기 및 강성찬 의원(2009)이 입법발의 하였으나, 입법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 되고 아직도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민간조사업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제도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된 점들을 반영하여 민간조사업제도가 국가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에 이바지하고 있도록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새롭게 입법발의 되어 민간조사업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6호 (법률 제10465)
- [2] 전대양. (2006). 민간조사업법안의 주용 쟁점에 관한 연구-이상배·최재천 안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25-45.
- [3] 일본독립행정법인국민생활센터. [www.kokusen.go.jp/pdf/n-2011069\\_1.pdf](http://www.kokusen.go.jp/pdf/n-2011069_1.pdf), 검색일: 2012. 8. 17
- [4] 강영숙. (2006).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이승철, (2008).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255-276.
- [6] 안영규. (2010). 민간조사업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 73-107.
- [7] 조성구·김태민. (2012).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33: 241-267.
- [8] 이상원·김상균, (2007), 공인탐정 교육훈련 모형에 관한 기초연구, 「한양법학」, 21: 622-650
- [9] 손상철, (2011),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 부처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131-162.
- [10] G8research. [www.g-eight.jp/manual101.html](http://www.g-eight.jp/manual101.html), 검색일: 2012. 8. 17
- [11] 위키피디아 재팬. [ja.wikipedia.org](http://ja.wikipedia.org), 검색일: 2012. 8. 17
- [12] 大徳 直美·原 正紀. (2010). 「挑戦する経営者(第80回)人助けの職業である探偵業を, ビジネスとして進化させる経営者」. 企業診断. 57(1), 6-11.

- [13] 日本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第1條(平成18年法律第60号).
- [14] 日本警察廳. (2012), 平成23年中における探偵業の概況
- [15] 社團法人日本調査業協會. [www.nittyokyo.or.jp](http://www.nittyokyo.or.jp), 검색일: 2012. 6. 30
- [16] 社團法人探偵協會. [www.detective.or.jp](http://www.detective.or.jp), 검색일: 2012. 8. 17
- [17] 特立行政法人國民生活センター, [www.cache.yahoo.co.jp](http://www.cache.yahoo.co.jp), 검색일: 2012. 8. 17
- [18] 村上 麻利. (2007).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等の概要について. 「Valiant」, 25(8): 22-25.

---

[저 자 소 개]

---



김 일 곤(Kim, Il-Gon)

2004년 일본오사카체육대학원 석사  
2011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 박사  
現 중부대학교 경호무도학과  
외래교수

email :ilgonkm@daum.net